

남북한 경제협력 클레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laims for the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고재길*
Jai-Kil Ko

〈목 차〉

- I. 서 론
- II. 남북경협 구조 및 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현황
- III. 남북경협 관련 클레임 사례분석
- IV. 남북경협 분쟁해결 개선방안 및 시사점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남북경협, 남북교역, 무역클레임, 분쟁해결, 중재, 협상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류협력지원실 팀장, 경제학박사, koin777@naver.com

I. 서론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 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가 간 수출입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클레임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되어 갈수록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남북한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일종의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기업들에게 북한 측 거래파트너와의 클레임 발생우려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남북한 간 상업적거래 규모는 초기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고치에 달한 2012년에 약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2000년 ‘4대 경제협약의서’ 체결 등 교역¹⁾ 및 협력사업²⁾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국간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출입 절차, 결제, 통관, 통행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소 등으로 인해 질적인 발전단계 접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거래당사자간 실질적 분쟁해결 방안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비록 지난 2010년 ‘5.24조치’³⁾ 및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분야별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상거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 선행연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한 간 클레임 해결방법으로써 중재제도의 효과성과 제도적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들이다. 김광수(2008/2014)⁴⁾, 서정일(2004)⁵⁾, 신현윤(2007)⁶⁾, 이주원(2008)⁷⁾, 오현석(2019)⁸⁾, 정응기(2019)⁹⁾ 등 다수의 연

1)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반출·반입을 의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3) 2010년 5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로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 취해졌음.

4)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발전방향”, 중재 가을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9.;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5.

5) 서정일, “남북상사중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한국무역학회, 2004.8.

6) 신현윤, “남북상사중재의 현황과 과제”, 남북상사중재업무 세미나 발표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07.12.

7) 이주원, “남북상사중재에 있어 중재인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8) 오현석, “남북 투자분쟁해결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9.6.

9) 정응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해결”, 저스티스 제171호, 한국법학원, 2019.4.

구들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관련 상사분쟁 발생시의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과 이와 관련한 현안 및 이행과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당국 간 합의서 및 북한의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과 분쟁발생시의 대응방향에 관한 연구이다. 장명봉(2004)¹⁰⁾, 최석범(2007)¹¹⁾, 신현운(2016)¹²⁾, 조영승(2019)¹³⁾ 등의 연구에서 북한의 상사중재제도 현황 및 「대외경제중재법」 등 관련 법·제도, ‘남북 4대 경협합의서’의 성격 및 의의 분석을 통해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양안관계를 비롯하여 각국 중재제도 비교를 통한 남북한 간 분쟁해결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들이다. 최명길(2006)¹⁴⁾, 신중호(2010)¹⁵⁾, 양효령(2017/2018)¹⁶⁾ 등은 중국과 대만 간 상사분쟁 해결 관련 제도 마련 및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남북경협에의 적용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경협’으로 통칭)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의 클레임발생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 추진 기업들의 클레임 관련 대응현황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유형 등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남북한 간 상거래의 추이와 구조 그리고, 교류협력 관련 남북한 법·제도적 체계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남북경협 현장의 클레임 유형과 계약서상 분쟁해결 조항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개선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남북경협 구조 및 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현황

1. 남북경협 발전추이 및 구조

지난 1989년 이후 ‘5.24조치’로 인해 교역이 중단된 2010년까지 거래유형별 남북교역은

-
- 10) 장명봉,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일고”, 중재 겨울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11.
 - 11) 최석범,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7.2.
 - 12) 신현운,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154호, 한국법학원, 2016.6.
 - 13) 조영승, “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5.
 - 14) 최명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안교류법제의 시사점”, 법학논총 제18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2.
 - 15) 신중호, 중국-대만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10.12.
 - 16) 양효령,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9.; “중국 해협양안 중재센터 중재규칙의 특징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8.5.

상업적거래 87.4%, 비상업적거래 12.6% 등 상업적거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에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일반교역에 집중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등의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교역당사자간 직접교역이 증가하였고, 개성공단처럼 북한지역에의 직접투자 단계까지 이르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상업적 거래규모는 개성공단사업 관련 거래가 4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반교역¹⁷⁾ 39억 달러, 위탁가공교역 31억 달러 순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업적거래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해 2006년에 40%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52.8%를 기록함으로써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합한 규모보다 커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반면, 남북한 간 상거래는 무관세 혜택과 저임금인력 활용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특수성과 법·제도적 한계, 인프라 문제 등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표 1〉 남북교역 중 상업적거래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 분	순수교역		경제협력		전 체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1989-97	1,229,529	232,873	-		1,462,402
1998	72,701	70,988	-	38,853	182,542
1999	89,416	99,620	-	47,028	236,064
2000	110,529	129,190	-	33,631	273,350
2001	111,389	124,924	-	18,856	255,169
2002	171,782	171,177	-	24,967	367,926
2003	223,670	185,009	-	21,121	429,799
2004	171,324	175,959	41,686	47,522	436,492
2005	209,778	209,729	176,736	93,298	689,541
2006	304,130	252,958	298,795	72,185	928,069
2007	461,411	329,912	440,677	199,173	1,431,173
2008	399,427	408,309	808,445	95,684	1,711,866
2009	256,141	409,714	940,552	35,708	1,642,115
2010	117,862	317,558	1,442,856	10,989	1,889,266
2011	226	3,704	1,697,632	765	1,702,328

17) 일반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반출·반입)”을 의미함.

구 분	순수교역		경제협력		전 체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2012	843	-	1,961,195	4	1,962,042
2013	589	-	1,132,174	136	1,132,899
2014	178	-	2,337,809	520	2,338,507
2015	183	-	2,703,565	553	2,704,301

*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일부 인도지원 물자를 제외하고는 반출입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의 통계를 활용하였음.

* 통일부 통계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남북교역 중 실질적인 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순수교역(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교역은 북한산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 반입이 주를 이루었는데, 2007년에 461백만 달러로 정점을 나타냈다. 일반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이전까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위탁가공 관련 물품 반출입 등이 증가하여 50~60%대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 증가로 10~20%대 이하로 떨어졌다. 교역 초기에는 철강금속제품 및 광산물이 주로 반입되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이 일반교역을 주도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우리기업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어 2009년에는 410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은 남북경협 진행과정의 오랜 노하우와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경험 등을 통해 위탁가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⁸⁾ 대상분야도 초기에는 섬유제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점차 농수산물 가공품, 전자·전기제품, 전기배선, 운반용 기계류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교역업체수 역시 1989년 32개사에서 2008년에 1,354개사로 대폭 확대되었는데, 분야별로는 일반교역 574개사, 위탁가공교역 187개사, 개성공단 관련 495개사 등으로 구성되었다.¹⁹⁾ 가장 비중이 높은 일반교역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농수산물 425개사, 광산물 52개사, 철강금속제품 17개사, 섬유류 6개사, 기타 74개사로 농수산물 취급업체 수가 73.3%를 기록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가공교역은 전체의 약 86%가 섬유류 관련업체로 분포되었다.²⁰⁾

18) 중소기업연구원, “남북중 3각 협력모델연구”, 2015 연구용역물, 통일부, 2015.3., p.78.

19) 통일부, 관세청 통관기준 통계자료(사업자등록번호 기준)

20)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 25년사, 2016.12., p.112.

2. 남북한 상사분쟁해결 관련 법·제도 및 규정

(1) 남북경협 관련 합의서 체결현황

1) 개요

남북은 과거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적용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당국 간 공식회담이 점차 증가하면서 당국 간 ‘남북합의서’ 체결과 발효절차 이행을 통한 법적효력 부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관련 하위법제 정비 순으로 교류협력 법제를 구축해 왔다.²¹⁾

〈표 2〉 2000년 이후 남북 당국 간 주요 경협합의서 체결현황

일 자	명 칭
2000. 12. 16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관련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2. 12. 8	개성공업지구 통신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 합의서
2003. 7. 31	남북 원산지 확인절차 합의서
2003. 10. 12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2004. 1. 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2006. 6. 6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
2007. 7. 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세부합의서
2007. 10.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정상선언
2007. 11. 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 임수호 외,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과 추진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2., p.51.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2000년 12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등에 관해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관련 합의서」(이하 ‘남북 투자보장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01년 6월 국회동의를 거쳐 2003년 8월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는 북한의 대남 경협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21)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pp.513-514.

2)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 관련 합의서

이상의 '4대 경험합의서' 중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에서 남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해당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자산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²²⁾ 특히, '남북 상사분쟁해결합의서'는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과정과 절차를 명시하였는데, 처음으로 상사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설립에 합의하였다. 즉,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였다.²³⁾ 동 합의서 발효의 후속조치로써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²⁴⁾ 그리고 이는 쌍방 각기 합의서 발효절차를 거쳐 2005년 8월 「관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경유하여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해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약'의 방법으로, 2차적으로는 '중재'와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⁵⁾ 남북한 간 사법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경험관련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직까지는 기 합의된 남북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반면, 현재까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도 제정되지 않은 실정에서 청산결제 사안이나 상사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르면 북한이 임의대로 남한의 투자자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는 등 기 마련된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다.²⁷⁾

(2) 북한의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제 및 분쟁해결 조항

1) 개요

북한의 대외관련 법제는 외국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이 되며,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⁸⁾ 1984년 이후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 대외경제 관련 법규를

22) 신중호, 전게서, p.30.

2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2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4조

25)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26) 신현윤, 전게논문, 2007.12., p.1.

27) 최장호 외,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2., p.47.

28) 이기희,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5호, 2003.12., p.79.

제정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무역법」, 「기술수출입법」, 「대외경제중재법」 등의 제정을 통해 대외무역제도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 제·개정된 법제들의 특징은 북한 대외무역의 원칙 제시 및 절차 확립, 분쟁해결의 원칙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무역과정에서의 정치적 비중을 줄여나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²⁹⁾ 특히, 1995년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제정을 통해 대외경제계약의 원칙과 이행, 분쟁해결 방안을 법제화하였고,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여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절차를 마련하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합영법」과 「합작법」에는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출자방식과 심의기관, 정관, 이윤송금, 책임소재, 우대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투자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북한에 재산, 재산권 또는 특허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합영³⁰⁾, 합작³¹⁾, 단독의 형태로 투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³²⁾ 투자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부문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³³⁾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2011년), 「무역법」·「세관법」(2012년), 「수출입상품검사법」(2013년), 「합작법」·「합영법」·「대외경제중재법」(2014년) 등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2) 국제무역·투자분쟁 관련 법령 현황 및 조항 구성

북한에서 국제무역분쟁 관련 해결제도는 북한 「민법」, 「민사소송법」, 「대외경제중재법」, 「대외민사관계법」 등의 국내 법·규범들, 개별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 국제무역 분쟁해결과 관련한 다자조약들 및 국제관례 등에 기초하고 있다.³⁴⁾ 북한 ‘대외경제성’ 소개에 따르면 북한에서 투자과정 중 발생한 분쟁은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추천하고, 협상으로 해결불가 시 조정, 중재, 심판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국제중재, 제3국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⁵⁾

중재에 관한 법적 근거인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이며,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등 외국인투자관계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분쟁해결수단으로써의 중재제도를 총괄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기업의 대북투

29) 최장호 외, 전게서, p.41.

30) 북한기업과 외국기업의 공동투자, 공동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경영활동을 하고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자기 등록 자본으로 책임진다.(북한 「합영법」 제5조)

31) 북한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가 공동 투자하지만 북한 측에서 단독으로 경영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외국 상대의 출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형태임.

32) 북한 「외국인투자법」 제2조

33)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對外投資合作國別(地區)指南-朝鮮(2017年版), 2017., p.43.

34) 장명봉, 전개논문, p.15.

35)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전게서, 2017., p.66.

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³⁶⁾ 동 법은 ‘중재합의’, ‘중재부 구성’, ‘중재절차’, ‘재결집행’ 등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7월 제정된 이래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1차 개정에서는 유엔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상당 부분 수용한 바 있다.³⁷⁾ 또한,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의 특징은 중재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요내용은 첫째, 중재위원회를 기존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및 ‘조선해사중재위원회’에서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정하였으며,³⁸⁾ 두 번째로,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추가하였고,³⁹⁾ 세 번째는 적용범위를 대외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하였다.⁴⁰⁾ 이밖에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과 외국인투자 관련법상 분쟁해결 조항을 보면 ‘당사자간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정책의 추진인데, 2013년 5월에 제정된 「경제개발구법」에서는 분쟁해결 관련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신설,⁴²⁾ 조정, 국제중재 및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⁴³⁾ 이를 통해 분쟁해결에 대해 “중재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절차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⁴⁴⁾는 조항을 통해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북한의 대외무역 및 투자 관련 법규상의 분쟁해결조항 현황

구 분	조항	내 용
「대외경제계약법」	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36) 신현윤, 전개논문, 2016.6., p.196.

37) 신현윤, 전개논문, 2016.6., p.207.

38)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3조

39)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5조

40)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

41) 북한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42)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북한 「신소청원법」 제2조)

43)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7장(제59조~62조)

44)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61조

구 분	조항	내 용
「외국인기업법」	30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외국인투자법」	22조	
「외국투자기업노동법」	47조	
「외국투자은행법」	32조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47조	
「합작법」	23조	
「합영법」	46조	
「토지임대법」	42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종합무역장관리법」	39조	
「가공무역법」	42조	
「국제철도화물수송법」	42조	

* 북한의 각 법률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러한 내용은 다른 경제특구법령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나선경제무역지대법」,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과 2013년 「경제개발구법」에 이어 2014년 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도 ‘제3국의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염두에 두고 외국의 중재판정을 수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표 4〉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 법규상의 분쟁해결조항 현황

구 분	조항	내 용
「경제개발구법」	60/61 /62조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기관의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	81/82 /83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72/73 /74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45) 신현윤, 전계논문, 2016.8., p.208.

구 분	조항	내 용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1조	국제관광특구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북한의 각 법률을 토대로 저자 작성

Ⅲ. 남북경협 관련 클레임 사례분석

1. 남북경협 추진시 클레임 유형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받기 위해 손해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으로는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 인상·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 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의 병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⁴⁷⁾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은 2003년 8월 ‘투자보장 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경협분야 ‘4대 합의서’가 발효되고, 2005년 10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단순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서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수산업, 경공업, 광업은 물론 IT 분야로까지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때 약 1,300여개를 육박하는 많은 업체들이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클레임 사례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북한 측 일방에 의해 처리되어온 실정이다. 남북한 사업주체간의 상사분쟁은 북한 측의 대외무역 경험 및 인식 부족, 내부의 물류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른 당사자 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기지연, 품질불량, 수량문제, 대금결제 문제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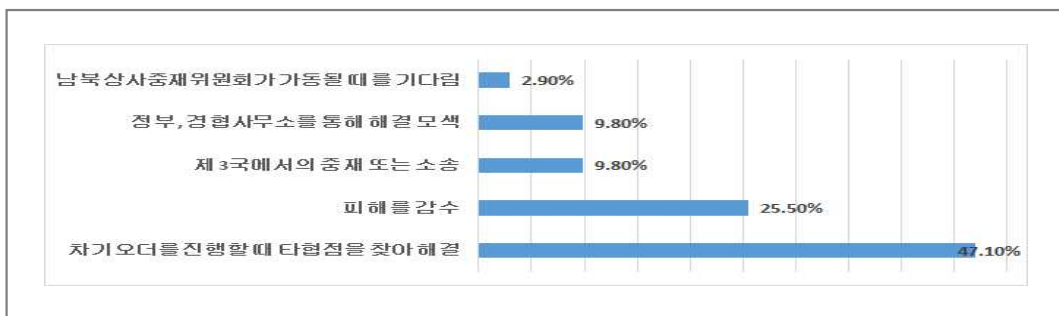
첫 번째, 거래당사자간 계약사항에 대한 북한 측 위반에 따른 경우로 동일 품목의 중국산 및 남한 내 시장가격 동향, 북한 내 생산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통보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대상물품의 하자과 관련된 클레임으로 남북교역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반입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문제

46) 박성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유원북스, 2016., pp.15-43.

47) T. R. Newan, "Claims-Made Coverage: What is a Claim?," FDCC Quarterly, Vol. 63 No. 1, 2012., p.4.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반입 비중이 높은 농림수산물의 경우, 품목 특성상 생산·보관, 선적·수송 과정에서의 변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북한은 보관시설이 열악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품질하자와 관련된 클레임이 자주 발생한다. 세 번째는 계약물품의 납기관련 클레임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항만시설과 연결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 부족과 물류체계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 하의 유통경로 및 단계별 판매마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클레임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처리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데, 남한업체의 클레임 제기에 대해 묵살하거나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해당업체에 대해 거래중단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이밖에 합영 또는 합작사업의 경우에도 북한 측이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배분이나 채투자, 회계처리 및 감사 등의 부분에서 갈등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클레임 발생 상황에서 우리업체들의 대응유형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북측의 결정적 하자에 의해 품질·수량 관련 문제 발생시 차기 제공분에 이를 감안하는 상계방법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상호 거래기간이 오래되고 거래관계가 밀접한 일부 업체들의 경우는 반송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사례 등이 있다. 반면, 대부분 업체들은 거래중단을 우려하여 제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기 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등 소극적 입장에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⁴⁹⁾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조사업체의 47%가 북한과의 분쟁 발생시 다음 거래에서 타협점을 찾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25.5%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그림 1> 남북교역업체 상사분쟁 해결 방법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Trade Focus 제9권 10호, 2010. 3., p.25.

48)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경협업체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4.4.

49)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계자료, 2014.4.

50)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Trade Focus 제9권 10호, 2010.3., p.25.

이상과 같이 남북경협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클레임 유형과 대응실태에 대해 살펴본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외거래 관련 북한의 인식부족과 제도 및 절차 미비 등에 기인한다. 분쟁발생시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은 사전에 발생소지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것이 계약체결시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 명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클레임 발생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교역·경협업체들이 북한과 체결했던 관련서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남북경협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그동안 남북경협 현장에서 체결되었던 실제계약서 중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35건을 대해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업분야는 크게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북한 내륙투자 협력사업 부문으로 분류하였고, 일반교역 15건, 위탁가공교역 및 내륙투자 관련 각각 10건의 계약서를 활용하였다.

(1) 일반교역

일반교역은 남북한 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로,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상품을 북한에서 반입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표 5〉 일반교역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6건)	협의를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간 이익을 원칙으로 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함.
B형 (6건)	남북상사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쌍방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북남이 맺은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상사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함.
C형 (3건)	기타	- 계약 이행과정에서 상호간 문제가 발생하면 '민경련'의 최종 합의안에 따름. - 계약 이행과정 또는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상방식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법적분쟁 발생시 제3국법으로 조정 해결함. - 계약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호혜의 원칙에서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나라 준법기관에 중재하여 해결함.

* 일반교역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교역초기에는 주로 철강금속제품 및 광산물이 반입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농수산물 품목이 주를 이루었다. 계약체결은 간접교역의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직접교역의 경우 북한의 대남경협 지정창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를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계약서는 총 15건이며, 농수산물 분야 8건, 광물(모래 포함) 분야 7건 등이며,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건의 분쟁해결 방법을 구분한 결과, 구체적 방법의 제시 없이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는 단순내용만이 명기된 사례가 6건이었는데, 이 중 5건이 농수산물 분야였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을 명시한 경우 역시 6건인데, 대부분 광물분야 계약 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민경련’의 협의에 따른다는 경우와 제3국법 및 제3국 준법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거래과정에서 제3국(중국)법인을 당사자로 내세워 체결한 사례였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북한에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설비 및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고, 가공물품을 남한으로 반입(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이다.⁵¹⁾ 주요 대상품목은 섬유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전기류, 농수산물, 생활용품 순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민경련’ 산하 분야별 총회사⁵²⁾와 이루어졌다. 분석대상 계약서는 의류·신발 분야 6건, 농산물 분야 4건 등 총 10건이며,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위탁가공교역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9건)	협의에 의한 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쌍방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함.
B형 (1건)	기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쌍방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유관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유관기관의 중재 처리를 받음.

* 위탁가공교역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에서처럼 분석대상 계약서 10건을 살펴본 결과, 일반교역과는 달리 총 9건의 계약서에서 구체적 방법의 제시 없이 쌍방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그

5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가이드북, 2012.10., p.19.

52) ‘민경련’은 산하에 삼천리총회사(전기·전자 등), 광명성총회사(경공업 및 의료기기 등), 개선총회사(농수산물 등), 새별총회사(의료 및 피복류 등), 명지총회사(지하자원 등), 광복총회사(철도 등) 6개의 총회사를 두고 있으며, 각 회사별 사업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

리고, 나머지 1건은 국내업체가 중국에 법인설립 후, 해당 중국법인과 북한회사 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였으며, 중국의 법규와 중국기관의 중재 처리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3) 투자협력사업

투자협력사업은 남한 사업자가 북한 내륙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수익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협사업이다. 초기에는 평양 중심의 소규모 제조업에서 점차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 경공업, I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⁵³⁾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은 ‘민경련’ 또는 북한 내 분야별 회사들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총 10건이며, 투자방식별로는 합작 9건, 합영 1건이고, 분쟁해결 조항의 구성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았다.

〈표 7〉 투자협력사업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구성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A형 (3건)	협의를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 상이와 분쟁은 상호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함.
B형 (4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북남이 맺은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상사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함.
C형 (3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무역지대법규에 따라 재판기관의 판결에 따라 해결함. - 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사이 또는 합작기업공동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함. -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호상 화해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안될 경우 피고자 나라 국제무역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함.

* 투자협력사업 계약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 10건 중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내용이 3건이며, ‘남북한 간 합의한 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을 명시한 경우는 4건이다. 이밖에 투자대상지역이 북한 경제특구 내에 있을 경우, ‘해당지역 법규에 근거하여 재판기관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한 사례와 ‘합작기업공동협의회’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해외기업과 공동합작사업의 경우 ‘해당국 국제무역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게서, 2012.10., p.19.

IV. 남북경협 분쟁해결 개선방안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 간 상거래 클레임 발생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남북경협 재개에 앞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미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⁵⁴⁾ 아울러, 정부입장에서도 추후 남북경협 주체들의 실질적 클레임 예방 및 원활한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관련 기업 측면과 정부 입장에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남북경협 기업 측면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차원에서는 첫 번째,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제3국 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거래상대 및 상거래의 특성, 계약내용, 발생가능 분쟁의 성격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남북경협 분야별 계약상의 분쟁해결 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등 제3국법인의 형태로 북한 측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제3국법으로 조정·해결’ 또는 ‘중국유관기관의 중재처리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효한 분쟁해결 장치가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과 오랜 동맹관계 하에서 지속적인 대북한 교역·투자를 실시해 왔으며, 북한진출 중국기업들은 자체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중국상회’를 설립해 자국기업 대상 투자·무역 및 도급에 관한 자문과 지원 등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다.⁵⁵⁾ 현재와 같이 당국 간 분쟁해결 장치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는 명확한 해법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3국 법인과의 공동 진출방안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내륙투자기업들은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 공동진출을 통해 리스크 분산 및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무역·투자 법규 역시 경제개발구 및 특구

54) 신군재,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2., p.89.

55) 신현윤, 전계논문, 2016.6., p.193.

진출기업의 경우 ‘국제중재기관의 중재 제기’ 및 ‘국제중재위원회 중재규칙에 의한 분쟁 해결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북한당국이 상거래에서 국제기준의 반영을 증가시키며, 무역·투자 분야 등에서 정치적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한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실에서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미미하고, 선언적·형식적 성격을 많이 갖는다⁵⁶⁾ 사실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중 3개국 기업이 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내용에 분쟁해결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쟁발생에 대비해 제3자 조정기능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교역·경협기업들은 북한과의 계약에서 분쟁조항을 아예 삽입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대부분 실효성 없는 형식적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문제발생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남북상사분쟁위원회에서의 해결’을 명시한 계약조항 역시, 당국 간 구체적 후속조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북한 간 경협이 활발해져 우리기업, 개인, 단체와 북한의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이에 무역·투자·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행, 양도, 변경,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계약체결 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인하고, 반드시 정식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 조항을 최대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발생 가능한 클레임 유형을 검토하여 상호 교환되는 서류들의 철저한 점검과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및 분쟁발생시, 실질적 해결방안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3국의 상사중재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정부 측면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우선 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시 협의시스템 및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상사분쟁 발생시 일반적 국제상거래에서의 해결방법에 의할 수 없으며, 민족 내부거래 규정에 따라 남과 북의 어느 한쪽 국내법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국 간 합의 공동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임에 틀림없다.⁵⁸⁾ 그러나, 합의서 채택 이후 아직까지 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

56)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2018., p.3.

57) 서정일, 전계논문, p.118.

58) 김광수, 전계논문, 2014.5., p.9.

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남북한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는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상시 접촉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례는 매우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양안간의 교류협력 추진체계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로 약칭)⁵⁹⁾와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로 약칭)⁶⁰⁾로 대표되는 반관반민 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교류협력 창구 부재를 보완하고 있는 두 기관은 양안 교류협력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았다.⁶¹⁾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2015년 12월 29일 ‘양안중재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분쟁 및 양안 기업 간의 발생하는 경제관련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기 위해 중국 최초로 설립된 민간 중재기관으로서 양안의 경제·무역교류법제 환경조성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⁶²⁾ 남북한 간에도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위한 반민반관 형태의 남북교역 전문관리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중재절차 진행이전 단계부터 해당 클레임에 대한 상시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중국 북경과 단둥에 ‘민경련’ 대표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에 대한 비대칭적 협상구조를 형성해 왔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민간단체 형식의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시켜 외국의 비정부기구, 민간급 협회, 단체, 기업 및 개별 경제인들과 자국 경제단위를 연결하고, 특수경제시대 홍보 및 투자촉진의 기능, 투자관련 합의서·계약서 체결 권한을 부여⁶³⁾함으로써 대외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경협 전문관리기구 설립과 신의주 인접 중국 지역(단둥, 심양 등)에 동 관리기구가 운영하는 (가칭)‘남북경제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상사분쟁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북한 측 창구와의 상시 협의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접점에서 이를 지원하고, 남·북·중 3각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단둥은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중 간 경제교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최대 접경지역으로 남·북·중 3각 협력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곳에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남한의 중소기업, 중국의 조선족/한족 기업가, 북한 측 사업인력 등이 상시적으로 접촉 및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⁶⁴⁾ 두 번째로는 본격

59) 대만의 반민반관 비영리 재단법인이며,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측 ‘해협회’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0) 대만측 ‘해기회’의 교섭상대로 설립된 사회법인형태의 조직으로서 ‘해기회’와의 접촉을 통해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3통 및 정부차원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

61) 신중호, 전게서 p.114.

62) 양효령, 전게논문, 2018.5., p.115.

63) 조선신보 2013.11.29.자 보도. <http://m.nocutnews.co.kr/news/1141345>

64) 중소기업연구원, 전게논문, p.82.

적인 경제교류 활성화 대비를 위해서 북한이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등 국제중재협약에 가입하도록 적극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상사중재 관련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제도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적 해결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간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국 중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⁶⁵⁾ 측면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금년 4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에 가입함⁶⁶⁾으로써 CISG 90번째 회원국이 된 점은 조심스럽게나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국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경협 관련 사업주체간 분쟁해결 장치는 그동안의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체제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요인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남북경협 재개 및 활성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현황, 남북경협 현장의 클레임 유형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차원에서는 첫째, 거래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제3국 법인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진출방안 모색이다. 북한의 여러 가지 미비한 법·제도 환경과 미성숙한 시장경제 수준 하에서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사업 환경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국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사업파트너로서의 남한기업과 제3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당국 간 합의를 통한 구체적 제도보완 및 실질적 이행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반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내용의 구체적 작성과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조항 내 제3자 조정기능 추가의 필요성이다. 계약체결 시 남북경협의 제반여건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해결 조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3국의 상사중재원을 관할로 지정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적극적 협상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의 방안으로 남북한 간 상사중재에 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65) 신현윤, 전계논문, 2007.12., p.13.

66)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최종방문: 2019년 8월 31일)

될 수 있도록 당국 간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 나감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반민반관 형태의 ‘남북경협 전문관리기구’의 설립과 북·중 접경지역내 ‘남북경협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북한측 단일창구에 대응기구로써 상사분쟁 해결 등에 대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이 요구된다. 북한이 대남 경협사업 단일창구로 운영중인 ‘민경련’의 북경 및 단동사무소 설치와 외국과의 무역·투자촉진 창구로써 민간단체 형식의 ‘조선경제개발협회’ 출범·운영 등은 이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사전준비로 북한의 국제중재협약 가입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남북한 간 상사중재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남북경협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남북한 간 그리고 북한 내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남북경협 현장에서의 클레임 발생 유형과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여러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반면,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오랜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근 사례 및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은 향후 상황 변화시 추가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중재연구 제21호 제1권, 한국중재학회, 2011.3.
- 김광수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5.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 25년사, 2016.12.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가이드북, 2012.10.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역·경협업체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14.
- 박성호,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유원북스, 2016.
-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2018.
- 서정일, “남북상사중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집, 한국무역학회, 2004.8.
- 신군재,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2.
- 신중호, 중국-대만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10.12.
- 신현윤, “남북상사중재의 현황과 과제”, 남북상사중재업무 세미나 발표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2007.12.
- 신현윤,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154호, 한국법학원, 2016.6.
- 양효령, “중국 해협양안 중재센터 중재규칙의 특징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정의 시사점”, 중재연구 제28권제 2호, 한국중재학회, 2018.5.
- 이기희,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3.12.
- 임수호, 이효영, 최장호, 최유경, 최지영,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2.
- 장명봉,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일고”, 중재 겨울호, 대한상사중재원, 2004.11.
- 중소기업연구원, “남북중 3각 협력모델연구”, 2015 연구용역물, 통일부, 2015.3.
- 최장호, 최유정, 임소정, 이효영,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12.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2009년 평가·2010년 전망”, Trade Focus 제9권 제10호, 한국무역협회, 2010.3.

T. R. Newan, “Claims-Made Coverage: What is a Claim?,” FDCC Quarterly Vol. 63 No. 1, 2012.

商務部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對外投資合作國別(地區)指南-朝鮮(2017年版)」 2017.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_status.html (최종방문: 2019년 10월 31일)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Claims for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Jai-Kil Ko

This study is aimed at drawing up improvement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claim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evitaliz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that end, we first looked at the structure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related to resolving the claims. Also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im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by companies and the provisions of the claims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derive any problem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we were able to identif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causes of several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claims. First, at the corporate level, there is a need to create specific details of a contract for resolving disputes and to add additional third-party coordination functions in the relevant clause of the contract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a dispu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advance jointly with corporations in China and other third countries in order to secure stabil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discuss ways of promoting South-North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th North Korea so that follow-up measures can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a two-track strategy is suggested to provide a practical negotiation channel at the private level. Also it is necessary to be active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aty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full-fledged economic exchanges.

Key Words :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South-North Korean Trade, Trade Claim, Dispute Settlement, Arbitration, ADR